

부속서 10-가 국제관습법

당사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 10.5 조(투자에 대한 대우)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 “국제관습법”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부터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당사자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.